

비상경제장관회의
26-5-2
(공개)

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

2026. 3. 11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1. 노사정 공동선언 주요 내용	1
2. 후속조치 추진계획	1
1)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	1
2)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	2
3) 1년 미만 노동자,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	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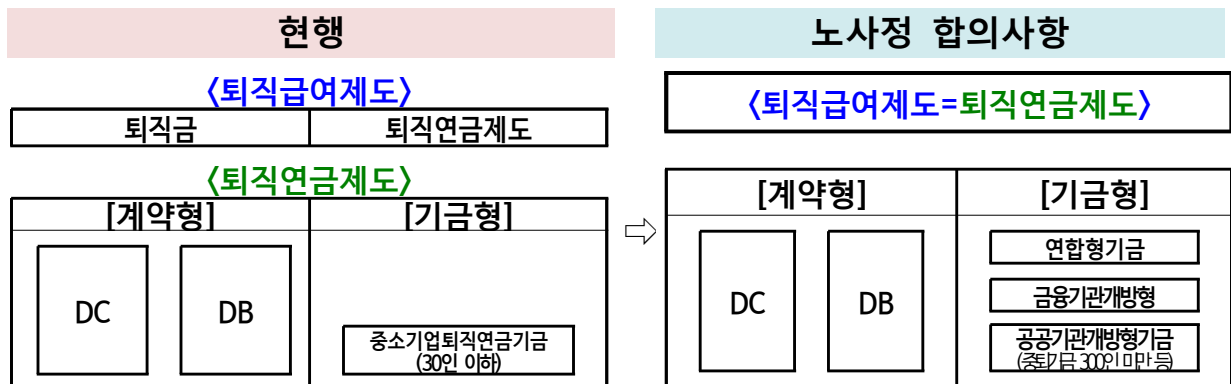
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

1. 노사정 공동선언 주요 내용

- (경과) '25.10.28. 「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」 발족*
→ 전체회의(5차), 간사회회의(4차) 거쳐 공동선언문 발표('26.2.6.)

* 노동계, 경영계, 정부, 청년, 공익(금융·연금·노동·사회복지 전문가) 등 총 18명

- (주요내용) 기금형 제도 활성화,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
 - (기금형) ①계약형 공존, ②'금융기관 개방형', '연합형' 신규 도입, ③중퇴기금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 등 공공기관 개방형 활성화, ④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기금 활용 금지, ⑤수탁자책임 등 수급권 보호
 - (사외적립 의무화) ①소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, ②구체적 시기는 영세·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, ③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, ④사외적립 이행력 제고, ⑤퇴직연금 운영 부담(교육 등) 완화 등



2. 후속조치 추진계획

- ❖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, 실태조사 등 통해 제도 세부 내용 설계(~7월)
→ 공동선언문 내용 토대로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'26년 연내 개정 추진

1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

① '공공기관형 기금' 구체화를 위한 논의 추진

- 공공기관형 '추진 시기' 및 '참여 범위'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 구체화 필요

②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

- (내용)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 필요*

* (검토 필요과제) ①인허가 요건(수탁법인 인적·물적요건, 설립·인가 절차 등) ②기금운용(수탁자책임, 지배구조, 수수료, 자산운용규제 등) ③관리·감독(감독체계, 평가·공시 등)

⇒ [시행방안] 관계부처(노동부, 재정부, 금융위 등), 전문가, 노사 등 참여하는 '실무작업반'을 통해 유형별(공공, 연합, 금융기관) 세부 제도안 마련(~7월)

〈 실무작업반 운영계획 (3.6 발족) 〉

- 다양한 분야,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과제 논의 필요
→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작업반(총괄)과 2개의 분과작업반 구성



②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

- (내용) ①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채불 예방 및 ②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위한 쏠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
- 퇴직연금 既도입 사업장에 대한 '사외적립 의무' 이행력 제고도 병행

⇒ [시행방안] '중소기업 실태조사'(유동성 여력, 애로사항 등, ~6월)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·지원방안 검토, '사외적립 의무 이행' 점검 등

③ 1년 미만 노동자, 특고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

- (내용)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, 특고·플랫폼 등을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(퇴직급여, 공제회 등) 검토

⇒ [시행방안] '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'(계약기간, 갱신관행 등, ~6월) 및 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한 대안 검토(7월~)